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우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53

발의연월일: 2025. 5. 20.

발 의 자: 김우영・김성환・이광희

양문석 • 한민수 • 장경태

김문수・김 윤・이정헌

이재강 · 김남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 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,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 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.

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 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 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,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 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,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 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 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경제성·정책성·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수도권 또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도시권의 도시철도, 광역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항목에 혼잡도 완화, 통행시간 절감 등 철도 분야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, 정책성평가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8조의3제2항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~ ⑤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
	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
	는 때에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
	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
	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
	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
	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
	른 수도권 또는 「대도시권 광
	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	에 따른 대도시권의 도시철도,
	광역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철도 분야 사업에 대하여
	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
	경우에는 경제성 평가항목에
	혼잡도 완화, 통행시간 절감 등
	철도 분야 특수성을 반영하여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항목
	을 추가하고, 정책성 평가항목
	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
	<u>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</u>
	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<u>⑥</u> (생 략) 제38조의3(국가연구개발사업 예

비타당성조사의 특례) ① (생략)

-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 항 및 <u>제6항</u>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(생 략)

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38조의3(국가연구개발사업 예
비타당성조사의 특례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<u>제7항</u>

③ (현행과 같음)